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을 상세화 하여 지역사회보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근거 규정과 위원장 연임 규정 개정을 통해 원활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모

## 2. 주요내용

- 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정의 상세화 (안 제2조)
- 나. 처우 개선위원회의 대표협의체 기능 추가 (안 제3조)
-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개정 (안 제11조)
- 마.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10. 12. ~ 11. 1.

- (2) 규제심사 : 심사진행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심사진행
- (6)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구 정책”을 “정책”으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하고, 제8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대표협의체의”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로 한다.

**제5조(구성)**을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2인 및 동협의체 실무분과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으로 한다.”를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는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구의

원 2명” 으로 하고,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를 “동 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로 한다.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협의체의 공공·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중 “(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를 삭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3항 중 “실무분과장이” 를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

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5조(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촉 해제 할” 를 “해촉할” 으로 한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를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 -----.</p> <p>1. ~ 3. (생 략)</p> <p>4. &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란 <u>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u></p>
<p>제3조(기능) ①----- ----- -----.</p> <p>1. ~ 6. (생 략)</p> <p>7. ----- <u>구 정책</u> ----- -----</p> <p>8. <u>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u></p> <p>9. &lt;신 설&gt;</p>	<p>제3조(기능)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정책</u> ----- -----</p> <p>8.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u>」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p> <p>9. <u>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4조(협약체 기구) <u>대표협약체의</u> - ----- ----- ----- -----</p>	<p>제4조(협약체 기구) <u>지역의 사회보장</u> <u>을 증진하고 협약체의</u> ----- ----- ----- -----</p>
<p>제5조(<u>구성</u>) ① 생략</p> <p>② ----- ----- ----- ----- -----</p> <p>---- <u>보건소장 및 실무협약체위원장</u> <u>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2인</u> <u>및 동협약체 실무분과위원장 1명</u> <u>은 위촉위원으로 한다.</u></p> <p>1. ~ 4. 생략</p> <p>5. <u>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u> <u>하는 공무원</u></p> <p>6. &lt;신 설&gt;</p>	<p>제5조(<u>대표협약체의 구성</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u>보건소장, 실무협약체위원장</u> <u>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약체 연합회</u> <u>대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u> <u>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구의원 2명</u></p> <p>6.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사람</u></p>
<p>제7조(실무분과) ① ~ ③ 생략</p> <p>④ <u>동 협약체 위원장으로 구성된</u> <u>지역분과를 둔다.</u></p>	<p>제7조(실무분과)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p>① ~ ④ 생략</p> <p>⑤ <u>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제8조의2 &lt;신 설&gt;</p>	<p>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동 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제8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u>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협의체의 공공·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u></p> <p>③ <u>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9조(위원명단 공개) ----- -----</p>	<p>제9조(위원명단 공개) ----- -----</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상기 조례 개정 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 흥선표(02-450-74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5.22.>

5. 구의원 2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삭 제>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9.5.22.>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⑤ 동 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협의체의 공공·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대표위원장 1명과 대표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 질병 ·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2.>

2. 행정실무 및 예산 ·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회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규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규명****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

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법규명</b>	<b>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b>
------------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6.16.]

과장 【복지정책과】				담당팀장 【복지기획팀】				담당자			
성명	유영보	연락처	450-7480	성명	이혜진	연락처	450-7481	성명	홍선표	연락처	450-7484